대한비과학회지 우수논문상 규정

(2014. 3. 9. 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과학회지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비과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여 비과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수여대상) 대한비과학회 정회원인 교신저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2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 연구논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회가 주관하여 간행하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심사) 대상 연구논문의 심사는 간행위원회에서 총 2편을 선정하고 이 중 1, 2위를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 (시상) ① 본 상은 회장이 대한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② 정해진 부상을 수여한다.
③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 논문이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7조 (기 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201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